



제342회 임시회
2015. 9. 2.(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3. 제안이유

-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활 기업의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활 활성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기금의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등)

5.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배경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동 법에 명시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행정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활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임명토록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임.

□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를 신설하여 충북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본 조항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으로 타당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단, 보건복지부 「2015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충북의 자활기금 조성총액은 2,550,242,085원이며, 2015년 지출현황을 보면, 비용자성사업 예산액이 77,000,000원으로 기금 총액의 3%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음. [별첨 참조]
 - 현재 자활기금 운용방식은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 원금을 사용하되,

비용자성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현재 금융권 평균 예금금리가 2%미만이고, 2015년도 6월30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수령한 자활기금 이자율이 1.55%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도 지출 예산도 원금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충북도 통합관리기금(신한은행)-자활기금 지급 이자율 : 1.55%(2015. 6.30 기준)**

- 현 시점에서, 안 제3조의2에 추가로 명시된 아래 사업 등의 경우, 규모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데, 이와 관련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의2 추가 지원 사업**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기금운용관(국장), 기금출납원(사무관)에 분임 기금운용관(과장)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함.

- 단, 분임기금운용관은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융자금 6건, 비용자성 사업 4건, 전세자금대여 1건 수준으로 일부 사업이 추가되더라도 기금출납 건수가 많지 않은데,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별첨 참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그 밖에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

※ **별첨**

충청북도 자활기금 현황

자활기금조성 현황(2015. 7. 31. 기준)

- 총 조성액 **2,550,242,085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75,770,000원
 - 정기예금(3건) 342,051,143원
 - 보통예금(1건) 152,420,942원
 - 용자금(8건) 480,000,000원

예치금 현황

구분		대상	예치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예치(2015.02.27-2015.08.27 1.50%)	200-202-520080	100,755,051
	정기예금예치(2015.05.07-2015.11.07 1.38%)	200-206-141590	41,296,092
	정기예금예치(2015.06.04-2016.12.04 1.31%)	200-207-508453	200,000,000
보통예금		100-000-117660	152,420,942

용자금 현황

구분	채무자	기업및사업단명	용자일	용자기간	잔액	비고
계		6건			48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착한농부사업단	2010.10.14	10년(2020.10.14)	7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정어품한우사업단	2010.12.22	10년(2020.12.22)	50,000,000	
청원군	청원지역자활센터	우렁각시	2011.04.27	10년(2021.04.27)	90,000,000	
괴산군	괴산지역자활센터	침구사업단	2011.04.27	10년(2021.04.27)	7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보은제면	2012.04.30	10년(2022.04.30)	100,000,000	
충청북도	충북광역자활협회	충북광역자활센터	2013.05.30	3년(2016.05.30)	100,000,000	

2015년 지출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177,000,000	68,000,000	109,000,000	
비용자성사업	자활기업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48,000,000	45,000,000	3,000,000	
	자활생산품 전시회	6,000,000	0	6,000,000	
	자활근로자 교육	16,000,000	16,000,000	0	
	자활사업 종사자 연찬회	7,000,000	7,000,000	0	
자금대여	전세 자금 대여	100,000,000		100,000,000	